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8일, 이재관의원 등 27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9.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1.2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1.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영업기밀 등의 핵심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 전략기술 보호·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6항 및 제45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기본계획·실행계획·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에 대한 국회 보고 (이재관의원안, 이상식의원안)

이재관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및 안 제45조의2 신설)

이상식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결과를 확정 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이재관의원안	이상식의원안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u>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이재관의원안	이상식의원안
④ (생략) <신설>	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유출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조¹⁾ 및 제6조²⁾는 5년 단위의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계획의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국가안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요약된 형태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재관의원안은 기본계획을, 이상식의원안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경우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정책의 기본방향, 동향, 제도 등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다루는 반면,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되고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의 국회보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집행과 제도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비교

구분	기본계획	실행계획
명칭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육성·보호 실행계획
근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5,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6,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3
주기	5년 단위	1년 단위
주요 내용	-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동향·발전전망 -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전략산업 등의 공급망 안정 대응, 원부자재,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품목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자원의 고도화와 민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실행계획

참고로, 여러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실행계획, 시행계획 등 5년 또는 1년 단위의 행정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례는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에서 찾을 수 있음³⁾⁴⁾.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은 현재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 제출, 상임위에서의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회에 제공·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임.

한편,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의 보고와 관련하여 이재관의원안은 매년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고 내용,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상식의원안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황을 알리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등⁵⁾에서 일부 사례에 관해 공개하는 경우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 및 결과를 특정한 형식이나 주기에 따라 종합하여 공개하고 있지는 않음.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③ 방위사업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 4) 「장애인복지법」, 「보건의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특별법」,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공공외교법」, 「청년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임.

5) https://www.nis.go.kr/AF/1_5_1_2.do (홈>주요업무>산업보안>기술유출현황)

이에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을 통해 전략기술의 유출·조치 현황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회가 확인과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임.

전략기술의 유출 및 조치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정보·수사·사법기관에 산재해 있는 정보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취합·정리되어 국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당 현황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까지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내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의 유출·절취 관련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매년 2회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제출하도록⁶⁾ 규정하고 있음.

6)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제4조(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절도에 관한 보고)(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EC. 4. REPORT ON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ABROAD)는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은 매년 2차례 지적재산집행조정관, 지적재산담당 상무부차관, 미국특허청장 및 기타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절취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제출하고, 법무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웹사이트에는 1건의 보고서만 확인됨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기술 유출 현황과 조치결과는 정보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사항으로, 조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출현황과 조치결과를 파악·제공하기가 어렵고,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⁷⁾하고 이미 동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발의⁸⁾되어 있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개정안 반영 여부를 다루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임.

7)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8)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1. 안철수 의원 발의 개정안(2024.7.18.)

제17조의2(국회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및 사실관계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권향엽 의원 발의 개정안(2024.8.12.)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정보제출 요구 시 수출승인 규정 준용 (이재관의원안)

이재관의원안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전략기술의 법 제12조⁹⁾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출 승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3] 조문대비표

현 행	이재관의원안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u>

9)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략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현행	이재관의원안
⑥ (생략)	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위해 반도체 기업의 재고, 수율, 판매정보와 같은 영업비밀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해외사업장이 속한 국가의 정부 및 기관 등에 의한 전략기술 유출 위험이 대두된 바 있음.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법인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전략기술의 보호를 위해 수출 승인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

기술보호법’)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17조¹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4조제2항¹¹⁾ 및 제12조¹²⁾에 따라 전략 기술을 해외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정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 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외국정부의 요구에 따

10)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7조(수출 승인 신청 대상)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기업 등에 매각, 이전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 매각
2. 외국기업 등에 자료전송, 양도, 기술지도, 위탁연구, 위탁생산, 인력의장기과전 등을 통한국가핵심기술의 이전
3. 외국기관 등에 실질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이전·공유를 위해 진행되는 세미나, 강의, 학술발표 등 특정기관과 기술 협력이나 정보 교류
4.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외국기업 등과의 연구 및 공동연구 참여(외국기업 등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 수행하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를 포함)
5.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을 허락하면서 관련 영업비밀 등 비공개기술의 동반 이전
6.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 양수인또는 실시권자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의 이전
7.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8.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해외 인증, 인·허가를 위한 기술자료 제공
9.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10.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열람·사용 등의 허용
11. 기존 수출 승인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은 해외 법인이 신축 사업장(공장)으로의 기술 재이전
12. 위 1호에서 11호 외의 다른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행위

1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략)

⑥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금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른 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보호 근거를 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
부고시) 및 산업기술보호법 준용을 통해 두기보다 법률에서 직접 명시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개정안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가 해외
사업장의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외국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수출 승인
대상에 해당되어 이미 수출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없으나, ‘외국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수출승인 대상에 포함
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취지라면 개정안 제6항을 신설하는 대신 제
1항을 개정하여 전략기술 수출의 범위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
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